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21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홍기원 · 송옥주 · 김영배
최혁진 · 장경태 · 허영
문진석 · 김교홍 · 윤종균
김태년 · 한민수 · 윤후덕
신영대 의원(13인)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함. 이들은 학습이나 사회 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편차가 큰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 제정을 통하여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률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및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센터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평생교육 지원 신청 등) ①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계선지능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경계선지능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평생교육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수행 지원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3.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경계선지능인 이해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연수
5.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

련 및 교육 지원

6.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8.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관 양성
9. 제3항에 따른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지원
10.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지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인별 평생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경계선지능인의 직업훈련 지원

7.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12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3조(비밀유지 의무)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도와 감독)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하는 기관(이하 “교육지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17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